

선박검사관련 규정 등 제·개정 사항 (2006년 상반기)

해양수산부 제공

▣ 낚시어선업법 시행규칙 개정(해양수산부령 제325호, 2006.1.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낚시어선업법의 개정(법률 제7642호, 2005. 7. 29. 공포, 2006. 1. 30. 시행)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및 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게시하도록 함에 따라 게시방법 및 게시장소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태풍주의보·경보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시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하게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낚시어선 및 승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파악하고 관리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 2006. 1. 30

▣ 낚시어선업법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19305호, 2006.1.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낚시어선업법의 개정(법률 제7642호, 2005. 7. 29. 공포, 2006. 1. 30. 시행)으로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형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의무의 대상이 되는 소형 낚시어선의 규모를 3톤 미만으로 정하고,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아니한 낚시어선업자 등에 대하여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선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서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가족어선원에 대하여 보험가입 등의 의무를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 2006. 1. 30

▣ 선박안전법 개정 (법률 제7927호, 2006.3.24)

○ 개정사유

가. 선박 운항 상황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

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선박에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여 해상에서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나. 선박소유자 등의 보고 및 자료제출 요건 등을 정하고 행정조사 실시 전 조사자, 조사일시, 조사내용 등을 피조사자에게 사전 통보하는 절차 등을 신설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게 함(안 제4조의3제1항).

나. 선박이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위치발신 기능을 가진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인정 함(안 제4조의3제2항).

다. 선장은 해적 또는 무장강도의 출몰 등으로 선박의 위치 정보 노출로 안전에 저해한다고 판단될 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제3항).

라. 우수사업장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이 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시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자, 조사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마. 선박 또는 사업장을 검사·확인한 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선박 소유자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바.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지 않거나 선박 위치보고의무에 위반하여 선박위치보고를 하지 않은 선박의 선장에게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 시행일 : 2006. 3. 24. 다만, 선박위치발신장치 관련은 2006. 9. 25일.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전문개정 (대통령령 제19297호, 2006.1.26)

○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초과 금지(영 제18조)
(1) 수상레저활동을 적극 활성화하되,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의 무리한 초과 승선(승선)으로 인한 수상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원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등록의 대상이되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증에 기재된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게 할 수 없도록 하되, 안전검사의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는 좌석수·형태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정원산출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변경등록 등(영 제22조 내지 제24조)

(1)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제도와 관련하여 등록대상 수

상레저기구의 범위를 정하고, 세부적인 등록절차를 마련하며, 등록사항의 변경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2)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수상오토바이, 일정 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또는 고무보트를 그 등록 대상으로 하고, 등록 의무자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2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도록 함.

다. 개인 소유 수상레저기구의 보험가입 의무 (영 제25조)

- (1) 수상레저기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해당수상레저기구 소유자로 하여금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에 따라 보험 가입 대상과 보험가입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등록을 하여야 하는 모든 수상레저구에 대하여는 반드시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험의 최저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의한 보험금액으로 함.

라.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영 제29조)

- (1) 수상레저기구 및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그 시설·장비 및 안전운항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점검의 조치가 요구됨.
- (2)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수상레저사업의 안전운항의무 준수 여부, 인명구조요원의 배치 여부 등 수상레저사업자에 대

한 안전점검을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마. 수상레저기구의 우수사업장인증·형식승인·검정 등(영 제30조 내지 제37조)

- (1) 수상레저기구의 우수한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상레저기구 제조·정비 사업장에 대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거나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를 통하여 수상레저기구와 관련한 중소기업체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 (2) 우수사업장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우수사업장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인증의 취소절차 등을 마련하고,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와 관련하여 형식승인의 대상, 형식승인·검정의 기준 및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방법 등을 정함.

○ 시행일 : 2006. 4. 1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문개정 (해양수산부령 제329호, 2006.2.13)

○ 주요내용

가. 인명안전장비의 착용 등(제14조)

- (1) 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이나 래프팅을 하는 때에 인명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여 수상레저활동에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2)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시 호각이 부착된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하고, 래프팅을 하는 경우에는 구명동의를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되, 관계기관에서는 수상레저활동의 형태 또는 날씨 등을 고려하여 인명안전장비에 관한 특별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야간 운항장비(제18조)

- (1)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으나 야간운항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야간 수상레저활동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야간운항에 필요한 장비를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2)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항행등·나침반 등 일반운항장비 외에 위성항법장치와 등(등)이 부착된 구명등을 갖추도록 함.

다. 안전검사의 일부면제(제27조)

-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등 그 안전성이 이미 검증된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안전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이중검사를 방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수상레저기구 우수사업장에서 제조하거나 정비를 받은 경우,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는 안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함.

라. 점검 또는 정비·원상복구의 명령(제34조)

- (1)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사업장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결과 필요한 경우 점검 또는 정비·원상복구 및 사용

정지명령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첨부하여야 할 서류 등을 정함.

- (2) 점검 또는 정비·원상복구명령서 등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한편, 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점검 또는 정비·원상복구 등의 필요 조치 없이는 수상레저기구 및 사업장 시설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 시행일 : 2006. 4. 1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19477호, 2006. 5. 18), 동법 시행규칙 개정 (해양수산부령 제337호, 2006. 5. 19)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 관련규정 : 해양오염방지법 23조의4 및 부칙 제5조, 시행규칙 제52조의4, 별표20 관련
-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선박 등

구 분	모 든 선 박	
대상 선박	오존층 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 → 할론계 소화장치, 냉동기, 에어컨 등	
대상 물질	할론 : Halon	○ 2006. 6. 29일 이후부터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 및 새로운 설치가 금지
	염화불화탄소(CFCs)	○ 2000. 6. 29일 전에 건조된 선박(현존선)에 기이 설치된 설비는 인정
	염화불화탄화수소(HCFCs)	○ 염화불화탄화수소(HCFCs)가 포함된 설비는 2020년 1월 1일까지 설치가능
참고 사항		
○ 오존층 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제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업체 또는 단체가 하도록 함.		
○ 오존층파괴물질		
- 할론 : Halon-1211, 1301, 2402(또는 114B2) 등		
- 염화불화탄소(CFCs) : Freon-11, -12, -113, -114, -115 등		
- 염화불화탄화수소(HCFCs) : HCFCs-22, 141b, -142b 등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신설

- 관련규정 :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의7, 시행령 제13조 및 부칙 제1조, 별표21 관련
-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선박 등

구 분	국내항해 선박	국제항해 선박
적용시기	2006. 6. 29부터	2006. 5. 19부터
적용대상 선박	총톤수 400톤 이상	총톤수 400톤 이상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함유량 4.5%미만의 연료 유사용 ○ 본선에 연료유공급서(별표21) 및 연료유 견본(별표21의 2) 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발틱해 및 북해)항행선박 : 황함유량 1.5%미만의 연료유 사용 또는 황산화물용 배기가스 정화장치 설치 ○ 상기외의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 : 황함유량 4.5%미만의 연료유 사용 ○ 본선에 연료유공급서 및 연료유견본 비치 ○ 기름기록부 본선 비치

질소산화물(NOx)의 배출규제 디젤기관 설치 신설

- 관련규정 :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의5 및 부칙 제6조, 시행규칙 제52조의5 및 부칙 제2항 관련
-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선박 등

구 분	국내항해 선박에 설치되는 디젤기관	국제항해 선박에 설치되는 디젤기관
대상 설비 및 적용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4kW(400PS) 이상의 디젤기관 : 2006. 6. 29이후부터는 NOx 검사를 받아 선박에 설치 ○ 130kW(176PS)~294kW(400PS) 미만의 디젤기관 : 2009. 6. 29까지 NOx 검사 적용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 1. 1.이후 건조된 선박에 설치되거나 주요개조가 이루어지는 130kW(176PS) 이상의 디젤기관은 NOx 검사를 받아 선박에 설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 관련규정 : 해양오염방지법 제36조의2 및 부칙 제7조, 시행규칙 별표 18 관련
-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선박 등

구 분	선 박	해양시설
대상 시설	유증기수집제어장치	유증기배출제어장치
적용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시설에 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날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부터 적용 ○ 현존선(유증기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날 전에 건조된 선박)은 유증기배출제어장치 설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 	2009. 5. 19까지 설치
적용 대상	총톤수 400톤 이상유조선(유해물질을 산적운송하는 선박 포함)으로서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항만에서 별표 22의4의 휘발성유기화합물(휘발유, 납 사, 원유)을 싣고자 하는 선박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항만(차후 고시 예정)

선박 안에서의 소각금지

- 관련규정 : 해양오염방지법 제23조의8, 시행규칙 제52조의9 및 별표 18 관련

구 분	국내항해 선박	국제항해 선박
대상 선박	선박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물질을 선내에서 소각하고자 하는 선박	
대상 선박	일반형 소각기 2006. 6. 29전에 건조된 선박	2000. 1. 1전에 건조된 선박
대상 선박	IMO형 소각기 2006. 6. 29이후 건조된 선박	2000. 1. 1이후에 건조된 선박
대상 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내소각이 금지된 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로 운송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의 잔류물과 그 물질에 포함된 포장재 - 할로겐화합물질을 포함하는 석유 정제품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량 이상의 중금속을 포함하는 쓰레기 - 폴리염화비페닐(PCBs) - PVC(IMO형 소각기에서는 소각 가능) ○ 선내 소각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 21의3의 소각방법에 따라 소각하여야 함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한 검사

- 국내항해 선박
 - 검사시기 : 2006년 6월 29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입거(상가)검사일 또는 2009년 6월 29일 중 빠른 날까지

- 검사신청 :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신청 시 포함하여 검사신청

- 검사방법

• 상기의 대기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검사(검사방법은 별표 의 검사준비 사항 및 추후 시달할 검사점검표 참조)

◇ 400마력 미만의 디젤기관에 대하여는 2009. 6. 29부터 적용

• 검사후 해양오염방지증서 교부(대기오염방지설비 검사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 국제항해 선박

-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교부신청

- 검사 실시(검사방법은 국내항해 선박과 동일)

- 검사후 국제대기오염방지증서 교부 (IAPP증서)

※ IAPP증서는 2006년 7월 20일(아국의 MARPOL 협약 부속서 6 채택일) 이후부터 교부(동 일자 이전에는 IAPP 적합확인서 교부토록 되어 있음)

▣ 해상에서의인명안전을위한국제협약등에 의한증서에관한규칙 개정 (해양수산부령 제338호, 2006. 6. 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법률 제7787호, 2005. 12. 29. 공포, 2006. 6. 29. 시행)으로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관

리하도록 함에 따라 국제협약에 의하여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에 대하여 대기오염방지증서 및 국제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표기방법을 일부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 2006. 6. 29

▣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개정 (해양수산부 제2006-34, 2006. 6. 20)

○ 개정이유

5톤이상 소형선박의 무인기관실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방수구 설치 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 및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

○ 주요내용

가. 방수구 면적을 구체화 하고 현행 선박의 방수구 면적에 좀더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산식 신설(제11조제1항 관련)

$$A = \frac{2 \times m \times h}{100}$$

(m : 웰의 길이, h : 불워크 높이)

나. 무인기관실에 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 신설(제57조2 관련)

• 적용요건 : 선박소방설비기준 제81조제1항제1호가목

○ 시행일 : 2007. 7. 21

▣ 선박설비기준 개정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42호, 2006. 6. 30)

○ 개정 사유

하천 호소만을 운항하는 선박과 가까운 거리만을 운항하는 도선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실용성이 떨어지므로 AIS 설치대상을 완화하여 선주의 비용을 절감토록 함

○ 주요 개정내용

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설치대상에서 호소·하천만을 운항하는 선박 및 유선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도선은 제외함(제108조의5 제1항 제2호)

나. 폐위되지 아니한 장소에 임시여객정원을 지정시 비상탈출로 및 비상소집장소, 통로는 여객정원지정 장소에서 제외함

○ 시행일 : 2006. 6. 30

▣ 선박소방설비기준 주요 개정내용 (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43호, 2006. 6. 30)

○ 개정이유

소형 선박의 기관실은 장소가 협소하여 운항중에 선원이 상주할 수 없어 화재사고에 취약하고, 화재발생시에는 전소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이러한 무인기관실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기 위함

○ 주요 개정내용

가.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의 요건 마련 (제21조의2 관련)

→ 자동확산형소화기의 성능요건과 통합

※ 무인기관실 : 원격제어장치에 의하여 제

어되는 주기관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기관운전중 선원이 계속적으로 배치되지 아니하는 기관실

나. 어선의 기관실에 대한 소방설비 요건 보완 (제81조 관련, 총톤수 1,000톤 미만 어선)

1) 무인기관실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비치

-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

- 화재탐지장치 및 고정식소화장치

※ 금속제 선체인 경우에는 무인기관실에 화재탐지장치 및 기관실 각 출입구마다 휴대식분말소화기 또는 탄산가스소화기 2개 이상 비치로 가능

2) 무인기관실 이외의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에는 기관출력 750kW 또는 그 단수마다 1개의 휴대식 소화기 비치

3) 상기의 소방설비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휴대식소화기 추가 비치

- 총톤수 500~1,000톤 미만 : 3개

- 총톤수 80~500톤 미만 : 2개

- 총톤수 80톤 미만 : 1개

다. 제2종선 및 제4종선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비치(제89조 관련)

1)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

2) 화재탐지장치 및 고정식소화장치

※ 금속제 선체인 경우에는 무인기관실에 화재탐지장치 및 기관실 각 출입구마다 휴대식분말소화기 또는 탄산가스소화기 2개 이상 비치로 가능

○ 시행일 : 2006. 7. 30. 다만, 내연기관이 있는 장소의 소방설비 비치 관련 개정 규정(제81조 및 제89조 관련)은 2007년 7월 30일부터 시행